



기획재정부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에 따른 협조

1.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받은 「공직자 선물신고 안내」문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, 귀 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배너에 동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널리 알려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아울러, 귀 사의 임·직원이 국외출국시에는 미리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를 주지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관계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선물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1부. 끝.

기획재정부 장관



수신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, 한국투자공사 사장

전결 08/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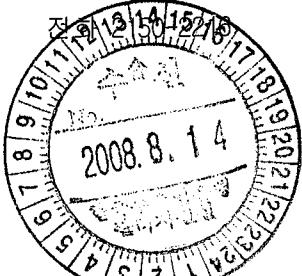
주무관 권오영 당당관 남병홍

협조자

시행 감사담당관-544 (2008.08.12.) 접수

우 427-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/ <http://www.mosf.go.kr>

전화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전송 503-9698 / oyounge@mosf.go.kr / 공개



공직자 선물신고 안내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- 신고기준액 :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

□ 신고요령(절차)

선물받은 공직자

·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에 의하여 소속기관·단체장의 장에게 신고

↳ (신고및인도)

소속기관·단체의 장

·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

↳ (이관)

등록기관의 장

· 선물의 재이관, 처분 등 사후관리

※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(대통령 직속기관, 부·처·청 등)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, 국회·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조치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요구 가능
- ※ 문의처 :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(02-2100-3350, 3351)